

|  |                 |                                    |
|--|-----------------|------------------------------------|
| <b>민주노총 /<br/>생명안전행동</b>   | <h1>보도자료</h1>   |                                    |
|  | 2023년11월22일 (수)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br>010-9067-9640 |
|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대표전화 (02)2670-9100   FAX (02)2635-134 |                 |                                    |

## 국회 생명안전포럼. 산재 피해자 유족, 현장 노동자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11월22일 (수) 오후 1시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국회 생명안전포럼. 생명안전행동

### (1) 취지

- 중대재해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3년 유예에서 또 다시 2년 연장을 하는 법안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 국민의 힘의 원 포인트 법안 발의, 노동부의 적용유예 연장 수용 입장 제출에 이어 국회 법사위 논의가 예고 되고 있습니다.
- 이에 적용유예 연장 반대에 대한 국회, 노동 시민사회, 산재 피해자 유족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 합니다.

### (2) 기자회견 순서

- 강은미 국회의원 : 생명안전포럼, 정의당 의원
- 윤미향 국회의원 : 생명안전포럼
- 산재 피해자 유족 발언 : 김미숙 (생명안전행동 공동대표/ 김용균재단)
- 50인 미만 사업장 당사자 : 정현철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회장)
- 시민사회 단체 발언 : 김혜진 (생명안전시민넷 상임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용관 (고 이한빛 피디 아버지,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공동대표)
  - 김선애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 고 김형주 님 유족)
  - 김정태 (산재피해자, 코로나 방역소독 작업 중 분사기 폭발사고)
- 생명안전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 : 전국 105개 노동, 산재 재난참사 피해자 유족 단체, 건강권, 법률, 시민사회 단체 참여 연대단체
- 첨부 : 1. 기자회견문

## 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반대 의견서 요약

<기자회견문>

**일하다 죽지않게 !! 차별받지 않게 !!**

**50인 미만 적용유예 연장 앞세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무력화 중단하라**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생명권 안전권을 차별하고 박탈하는 국민의 힘의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 개정안이 법사위 논의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산재 피해자 유족과 시민사회 그리고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적용유예 연장을 반대하고, 개정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는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범죄행위> 임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입니다. 지난 11월3일 법원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명확성의 원칙, 과잉 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 되지 않는다면 두성산업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기각했습니다.

경영계와 보수언론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확인되자. 이제는 50인(억)미만 사업장 적용을 <민생> 으로 둔갑시켜 개악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입니다.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 10년간 죽어 나간 노동자가 10,245명이고, 작년에 사고 사망으로만 707명이 죽었습니다. 이들의 목숨은 민생이 아니란 말입니까?

경영계는 답정너식 실태조사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약 60%가 준비 가능하다고 하더니, 8월에는 응답자의 60%가 대표이사나 임원인 조사로 준비 안된 사업장이 80%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부족을 연기 사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연장이 되면 안전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사업장은 5% 뿐입니다.

노동부 조사로는 81%가 이미 법 준수가 가능하거나 준비 중이고,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도 53%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법 시행 전 적용유예 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자체 발주한 실태조사는 발표하지도 않고, 경영계 조사만 내세워 적용유예 연장 수용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디엘 이앤씨 7건 8명 사망을 비롯해서 노동부

는 감독도, 수사도, 처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난 수십 년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를 방치해 왔습니다.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시민의 71% 찬성으로 제정된 법이고, 2023년 지금도 법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가 82%, 처벌 수위 완화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72%입니다. 경영계와 보수 경제지는 왜곡된 실태조사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은 단순한 시기 연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기업은 노동부와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작은 사업장은 적용유예 연장으로 중대재해 처벌법을 통째로 사문화하고 무력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는 모든 노동자 시민의 요구입니다.**

산재 피해자 유족과 시민사회 그리고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적용유예 연장을 반대하고, **개정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국회 생명안전포럼, 생명안전행동, 산재 피해자 유족

## < 발언문 >

### 1. 김미숙- 생명안전행동 공동대표 김용균 재단

제 목숨같이 소중했던 아들을 잃은 지 벌써 5주기가 다가왔습니다.

피켓트 아들을 숙제를 이어받아 노동자들의 생명안전을 지키기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지만 결과적으로 세상은 별반 달라진 것 없어보입니다.

imf이후 기업을 살리겠다고 정부가 앞장서서 하청을 만들고 비정규직을 확산시켰고 일력난을 해결하기위해 대거 외국인들을 받아들여 기업은 환영하지만 반면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쉬운 해고로 늘 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상당한 불평등과 위험을 하청 비정규직들에게 전가 시킨 결과가 용균이와 같은 소중한 아들 딸들을 잃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업안전보건법도 개정시켰는데 용균이 동료들을 지킬 수 없다가에 또다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힘겹게 통과 시켰습니다.

미흡하나마 그때는 적어도 죽음이 조금은 줄어들거라는 작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 시행되고 2년이 다 된 지금까지 죽음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이유는 윤정부가 비정규직들에 생명 안전을 경시해서 만들어진 참사라 생각합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내년부터 적용될 50인 이하 사업장을 현 정부와 여당 국민의 힘은 더 유예하자고 나서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산재사망사고 80%가 여기서 죽는데 더 유예하자는 것은 결국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고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더 밀어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어림없는 수작입니다. 3년 동안 안전조치 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음에도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시간을 더 준다 한들 안전조치 하겠습니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합니다.

국민 대부분이 노동자이고 시민인 만큼 정부가 반노동 정책으로 더 이상에 사람을 죽이는 악행을 멈추길 경고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킬 국가의 책무가 무거운 만큼 이를 경시하거나 외면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가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중대한 책무를 저버린다면 반드시 국민들이 그에 합당한 응징이 따를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저 또한 시민들과 함께 그동안 죽어간 영령들을 앞세워 유족들은 목숨 걸고 맞서서 기필코 죽음을 막아낼 것입니다. 당장 50인 유예를 멈추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 2.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회장 정현철

세월호 참사와 반복되는 비극적인 노동자 사망사고를 계기로 생명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현장에는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반월시화산업단지는 50인미만 사업장이 전체사업장의 90%가 넘는 작은사업장 밀집 산업단지입니다. 특성상 안전은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노동안전지킴이들이 방문하면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노동안전지킴이 방문을 받아들이고, 사업장내 유해위험요인을 함께 찾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렇듯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수용하는 움직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흐름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게 정부와 보수언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일 매일 저희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목도합니다. 정말 어이없는 사고들이 발생합니다. 지게차에 후미등과 경보장치를 안달아서, 개구부를 막지 않아서, 회전하는 롤러에 방호망을 달지 않아서, 안전간대를 설치하지 않아서, 마모된 슬링벨트를 사용해서, 호이스트 크레인 후크 해지기능을 해제후 사용해서 노동자들이 죽습니다. 조금만 신경쓰면 살릴수 있는 생명들입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50인미만의 작은 사업장일수록 안전은 낚기일에 밀려 뒷전입니다. 그러다보니 사망사고의 76%가 50인미만 작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고 정치가 작동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단순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냐 않하느냐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수많은 생명을 담보로 어렵게 마련한 안전사회를 어떻게 안착시킬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보수 언론이 만드는 공포마케팅으로 말미암아 산업현장의 안전개선 노력보다는 막연히 처벌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만이 현장을 휘잡고 있을 우려가 있어 안타깝습니다.

산업안전보건 패러다임은 안전보건기술단계에서 안전보건시스템단계, 안전문화단계로 이행하면서 안전사회로 진입하는 일반적인 변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기술적인 단계에서 안전보건 시스템 단계로 진입하는 수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변화를 촉진하고 안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50인미만 사업장을 묶어 공동안전관리자를 두고, 노동안전지킴이를 확대하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며, 사업장 컨설팅을 통하여 위험성평가를 안착화 시킬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의 인식변화도 필요합니다. 기업규모가 작다고 품질경영시스템 도입을 유보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품질경영시스템을 도입하듯이 기업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보해 달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안지켰다는 자기고백이며, 노동부나 사법부도 역할을 방기했다는 방증입니다.

우리사회가 안전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은 더욱 확고히 뿌리내려야 합니다.

### 3.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김혜진입니다. 우리사회에서는 위험이 아래로 흐르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돈이 없어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죽고,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에서 더 많은 노동자들이 산재로 죽습니다.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국가의 책임은 바로 이렇게 아래로 흐르는 위험을 직시하고 바로 그곳에서부터 위험을 없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위험한 업무는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대신 이주노동자를 위험업무에 투입합니다. 원청이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왔는데 그 내용을 담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거부합니다. 결국 권리가 없는 자들이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산재 사망자의 80%가 50인미만 사업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이 아래로 흐를 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정부가 나서서 작은사업장의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가 다가오니 '봐라, 작은사업장은 안되지 않냐'면서 법 적용을 미루기에 바쁩니다.

사업장이 크던 작던 모든 노동자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사업주들이 범죄자가 될까 걱정되어 노동자의 죽음을 방치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국민의힘의 뜻입니까.

결국 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정부가 노동자 안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고, 노동조건이 안 좋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더 위험에 빠뜨리려고 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며, 작은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역량을 키워 산재사고를 줄일 기회를 없앤다는 점에서 문제적입니다.

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시민들에 대한 위험도 높입니다. 작은사업장은 화학물질 관리가 잘 안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구미불산누출사건에서 보듯이 화학물질 누출의 피해는 지역적으로 확산됩니다. 건설현장에서 작은하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붕괴로 인한 시민위험도 생깁니다.

우리 시민사회는 위험을 아래로 흐르게 만들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정부의 무책임에 분노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의 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논의는 정말로 작은사업장 사용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중대재해처벌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국회는 지금 당장 개악을 중단하십시오. 정부의 무책임함을 옹호하여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죽음에 방조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 <중대재해 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 반대 의견서 개요>

### 1. 중대재해 80% 50인(억) 미만 사업장 발생. 10년간 10,245명 산재사망

- 2023년 11월3일 두성산업의 위헌법률심판 제정 기각되자, 50인(억) 미만 적용유예로 무력화
- 10년간 50인(억)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 12,045명. 사고 사망 76% 발생. 최근 3년은 80% 발생
- 법 제정 후 감소추세였으나 개악 추진 이후 증가추세. 2022년 전체 사고사망 (46명), 50인 미만 (37명) 모두 증가. 50인 이상 사고 사망 증가, 50인 이하 감소 주장은 여론 호도에 불과함

### 2.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점

- 법에 규정된 <재발방지 대책, 시정명령 이행, 안전점검, 안전교육> 도 적용유예 되는 것
- 7명 청년 노동자 실명 메탄올 중독, 9명 사망 세일전자 화재 참사 반복되는 것
  - 노동부 시정명령 거부로 실명피해 추가 발생했으나 피해자 손해배상 별도 소송 4년 소요
  - 2016년 화재 발생, 보험금 사기로 약 7억 착복한 세일전자, 2019년 화재로 9명 사망. 법 위반 밝혀졌으나, 사업주 관련 없다며 집행유예
-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9개 항 상당수 50인 미만 적용 대상 아님
  - 전담 인력, 산보위 설치 운영 적용 대상 아님. 예산, 인력등 하한액 기준 없음.
  - 위험성 평가, 안전관리자 자격 완화 등 중소기업장 적용 위한 제도개선 시행 중.
  - 안전보건 전문가도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 안전 법령 위반 사상 사고 3년 이상, 5년 이상 징역형 국내 법률도 차등 적용 사례 없음.
  - 환경범죄 단속법,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 연구실 안전환경법을 비롯 국내외 사례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으로만 처벌 시 문제점
  - 특수고용노동자 산재 사망은 산안법 처벌 규정 없음. 특수고용 노동자 중대재해 대책 무력화
  - 산업안전보건법 솜방망이 처벌로 재범 비율 일반 형법의 2배. 3년간 9범 이상도 352명
  - 2021년 징역형 평균 7.4개월, 평균 벌금 488만원. 피해자 징벌적 손해배상도 불가능

### 3. 경영계 50인 미만 사업장 답정너 실태조사. 적용유예 연장하면 담당 인력 확충 5.4%

- 50인 이상 기업 적용 전 실태조사에서 법 준수 가능함 31.9% 였음.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 59.2%로 의무 준수 가능하다 응답 비율이 더 높음
- 중기중앙회 2023년 4월 조사 법 준수 가능하다 59.2%. 8월 조사 준비하지 못했다 80%로 뒤 집힌 결과. 8월 조사는 제조업 93%대상. 대표이사 임원 64% 대상 실시로 답정너 조사
- 중기중앙회 8월 조사 준비하지 못한 이유 전문인력 부족 35.4%.. 그러나, 적용유예 연장하면 안전담당 인력 확충하겠다 5.4%에 불과함. 안전 담당 조직 신설이나 확대하겠다 3.5%

#### 4. 노동부 조사 법 상 의무 갖추었거나 준비 중이다 81%. 적용유예 연장 필요하다 20%

- 노동부 발주 한국안전학회 1,442개 사업장 조사
- 법상 의무 이미 갖추었거나 준비 중이다 82%, 안전보건 체계 이미 구축했거나, 내년까지 가능하다. 53%. 법 시행 전 적용유예 연장 필요하다 20%에 불과함.
- 안전교육 실시한다 91%, 위험성 평가 알고 있다 84%. 실시하고 있다 67%. 안전 활동 보고 받고 있다 75%

#### 5. 법 시행 이후 적용 대상 기업은 안전 투자 확대. 기업 인식 변화

- 법 시행 전 불가능하다 응답이 30%대 였던 50인 이상 기업. 법 시행 후 현장의 변화
- 2023 대한상의 조사 법 시행 100일 대비 1년 6개월 만에 담당부서 설치 45.2%에서 75.5%로 증가. 전담 인력 둔 기업 66.9%로 2배 증가. 법 이행하고 대응 가능 기업 61.3%로 2배 증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 현장 관리자 안전의식 향상 연구보고
- ‘선 안전조치 후 작업실시’ 위험작업 거부권, 산업안전보건위 설치 확대, 위험성 평가 참여 보장 등 법 시행 이후 현장 변화 확대

#### 6. 2023년 2,000명 조사.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되어야 한다 전체 82%, 처벌수위 완화 반대 72.4%, 사용자도 64.5% 처벌 수준 완화 반대

- 2022년 10월 재단법인 경청 의뢰 한국 갤럽 조사 중소기업 .1000곳 중 법 찬성 80%
- 2022년 중대재해 전문가 넷 667명 전문가 조사. 5인 미만 적용확대해야 한다 77%
- 2023년 한국비정규 센터 2,000명 대상 조사.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되어야 한다 82%. 사용자도 72.6% 찬성, 법의 처벌 수준 완화 반대 전체 72.4%, 사용자도 64.5% 반대

#### 7. 적용유예 연장은 단순한 시기 연장 문제가 아니라 법 무력화의 한 축

- 법 적용 대상 중대재해 400건 이상이나 현재 기소는 30건 이내, 1심 판결은 10건 미만. 특히 7건 8명 사망한 디엘 이앤시 등 동일기업의 반복 사망도 기소조차 안 됨.
- 대기업은 봐주기 수사,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 연기.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로 귀결